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41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다. 제출일자 : 2016. 10. 31.
- 라. 회부일자 : 2016. 11. 3.

II. 제안이유

-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하여 소통과 배려차원에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 체력단련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나, 개방취지와는 다르게 특정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며, 특정단체의 독점사용으로 학생들과 다수의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본래의 개방취지를 살려 누구나 학교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며 이용자의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취소 조항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 가. 개방의 원칙 신설(안 제3조)
 -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함
 - 사용허가여부는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사용목적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
 - 해당학교 학생과 인근주민들의 개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함
- 나. 사용허가 절차 규정 수정(안 제5조)
 -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받아야 함
 - 신청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
 - 사용허가 할 수 없는 경우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림
- 다. 사용허가기간을 1년 범위로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라. 구기종목 1일 사용허가시간 3시간 이내로 제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마. 사용료 조정 및 공공요금 징수 규정 신설(안 제8조 별표)
- 바. 별표 중 공공요금은 감면 미적용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 사. 사용허가 취소 조항 추가(안 제10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 민원이 제기되어 시정요구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 아.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조항 추가(안 제12조제5항)
 - 학교 내 시설물 축조 금지, 축조하는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
- 자. 영리로 보는 행위 신설(안 제13조)
 - 회원을 모집하여 가르치는 행위
 - 리그 또는 토너먼트 경기 참가자에게 금전을 받는 행위
- 차. 전대로 보는 행위 신설(안 제14조)
 - 사용허가 받은 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 사용자가 대관 또는 양도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IV. 참조사항

- 가. 관계법규 : 별첨 4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및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별첨 2)
- 다. 협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16. 9. 30. ~ 10.19.)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441호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학교를 개방하였으나, 학교시설에 대한 일부단체의 영리행위와 독점사용 등으로 인해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시설 사용료를 타·시도에 맞게 조정할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조례개정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시 개정 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¹⁾, 학부모들 또한 학생안전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반대의견²⁾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개방의 원칙 및 책무성 문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의 구체화,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허가 시간의 제한, 영리행위와 전대행위의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시설에 따른 학생안전을 담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조례 개정 추진 경과

일자	추진내용
2016.9.28.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공동 기자회견
2016.9.29.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 기준 안내
2016.9.30.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실시
2016.10.18.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회 개최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1)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총의 입장과 대안>

- ① 교육 및 학생 안전 공간인 학교를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생활체육 활동의 활성화 장소로 주객 전도시켜서는 안 돼!
- ② 서울시의회, 학교 개방에 따른 유괴 등 각종 범죄 노출, 방화, 시설 파손 등으로 학교보안관제 시행, 허문 담당 다시 세운 이유 잊지 말아야!
- ③ 사위시설 이용료 월 3만원 - 실 경비도 되지 않아 학교비용 부담 증가 / 물품보관 창고 활용 - 분실 시 학교 책임 소재 발생 우려 / 부대시설인 화장실은 대부분 학교 내에 있는데 외부인의 학교건물 내 진입이 가능케 하고, 청결 및 청소 문제 발생
- ④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시설 개방 불허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한 것은 학교 개방 확대 강요 - 학생 안전 고려 및 학교경영에 대한 학교장 고유 권한 침해 및 과도한 책무
- ⑤ 학교에게 과도한 책무 지우기 전에 사용자의 책임 및 부당한 요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 ⑥ 이해당사자인 학교와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교육적 사고가 아닌 선심성, 편의성 위주 조례 개정은 학교와 외부의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당장 폐기해야. (2016.9.8.)

2) 의회신문고 민원 접수 35건, 10,081명 학교시설 개방 반대 의견 제출

2016.11.03.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안건 제출
2016.12.06.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청회 개최 (서울시의회)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1) 개방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학교시설 개방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항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개방과 관련해서는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부령³⁾에서 학교시설개방을 의무화하였으며, 동 교육부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개방을 의무화하는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붙임 참조)

이런 점에서 안 제3조제1항의 “개방한다”라는 일반론적 규정은 상위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학교시설 개방 의무화 취지와 학교 개방과 관련한 전국적인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안 제2항은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 고려해야 할 학교 여건의 종합적 상황이란 결국 같은 조 제1항에 명시된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나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목적이 교육·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2항의 규정은 이미 같은 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에 사료되는 바, 입법 간소화 측면에서 안 제2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안 동조 제4항은 학교장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개별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의 최종허가권자인 학교장이 학교시설을 원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에게만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개별적

3) 「초·중등교육법」 제11조(법률 제5438호, 1997.12.13.제정)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교육부령 제749호, 1999.8.5.제정)

제2조 (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용을 막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동조 제4항에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라는 부대조건이 삽입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정당한 계약을 통해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는 바,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동 개정조례안 제5조는 학교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허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사용신청자로 하여금 사용시작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기사용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⁴⁾,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⁵⁾ 규정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을 단기로 사용할 경우 교장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시설사용이 가능하므로, 신청서 제출기한을 장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동조 제3항에서는 학교시설의 사용불허 시 사용신청자에게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행정책임자인 학교장에게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불허할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불허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함으로써 학교장의 자의적 미개방에 따른 학교현장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⁶⁾.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 및 허가는 행정기관⁷⁾의 통일적인

4)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활동을 포함한다)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성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의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5)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규정한 것은(동 조례 제6조제5항) 학교 개방 확대를 강요하고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과도한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16.9.8.)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신청인의 사용신청에 대한 허가는 일반민원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 불허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통일된 처리절차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1일 사용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동 조례안 제6조의2제1항은 생활체육 중 구기 종목에 대하여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포함하여(안 제8조제6항) 하루 사용시간을 기본 3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1시간의 추가허용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일부 사용자가 학교시설을 시간의 제한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시설이 다양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는 학교장이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3조제1항), 자칫 학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이용시간의 제한은 학교장의 사용허가 권한의 범위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 1일 사용시간의 제한은 주말 등 시기적 특성, 이용 신청자의 이용 성격 및 목적, 이용 만족도,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공간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와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별표)

- 현행 조례에서는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내 체육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를 10,000원(360㎡미만), 15,000원(360㎡이상 720㎡미만), 20,000원(720㎡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 제8조는 현행 조례를 기준으로 체육관 시설사용료를 2.5배~3배 인상한 금액인 30,000원(360㎡미만), 40,000원(360㎡이상 720㎡미만), 50,000원(720㎡이상)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2] 장기사용시 체육관 사용료 비교

(기준 : 3시간, 단위 : 원)

체육관 사용면적	종전 (80%)	현행(60%)		개정안(60%)		
		사용료	증감	사용료	증감	
냉난방 X	360㎡미만	14,400	12,000	△2,400 (△16.7%)	36,000	24,000 (200%)
	360㎡이상 720㎡미만	21,600	18,000	△3,600 (△16.7%)	48,000	30,000 (167%)
	720㎡이상	28,800	24,000	△4,800 (△16.7%)	60,000	36,000 (150%)
냉난방 O	360㎡미만	14,400	14,400	동일	43,200	28,800 (200%)
	360㎡이상 720㎡미만	21,600	21,600	동일	57,600	36,000 (167%)
	720㎡이상	28,800	28,800	동일	72,000	43,200 (150%)

이와 같은 사용료의 급격한 인상은 현재 사용료가 종전 사용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이 사용료로는 시설개방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조차 납부할 수 없다는 일선 학교의 문제제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동 개정안의 사용료 인상액¹⁰⁾은 현행 조례 개정시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제안했던 인상안(5,000원)¹¹⁾ 보다 무려 4배~6배 높은 인상분으로 인상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타 시·도와 형평성 있는 사용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현행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이용자에게 공공요금 측량기를 설치하여 별도의 공공요금을 징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서울시가 일부 공공요금을 보전할 계획에 있으며, 2017년부터는 학교시설의 전기료 인하로 단위학교별로 858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¹²⁾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

10) 현행 조례와 개정안 사용료 인상액(생활체육-평생교육)

체육관 사용면적	사용료(원)		
	현 조례	제출안	사용료 인상액
360㎡미만	10,000	30,000	20,000
360㎡이상 720㎡미만	15,000	40,000	25,000
720㎡이상	20,000	50,000	30,000

- 11)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교육재정과-17286,2016.8.25.) -사용료 인상(개정조례안 대비 각 면적별 5,000원 인상)
- 12) '학교전기요금 개편...점통, 냉골교실 사라질 듯'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16.12.19.)

는 바, 사용료 수입분은 결국 학교의 운영수익분의 변동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은 요금의 대폭 인상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상기한 여건변화와 현재 협의 중인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이외에 일체의 다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별도 측정기구로 산출한 금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학교장이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 이외의 공공요금 징수를 금지한 것은 당초 학교장의 자의적인 공공요금 책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학교가 별도의 공공요금 측정장치를 구축하지 않는 이상 공공요금 협상과정에서 동일한 혼란이 재발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사용의 경우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별도의 공공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용료에 포함해 징수하거나 이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 밖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동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총칙 규정으로,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열거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총칙으로서의 법령 체계의 적정성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는 학교내 음주, 취사, 불법 시설물 축조, 영리 및 전대행위 등 사용자의 적절치 않은 행위 등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책임감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타 시·도 학교시설개방 관련 규정

구분	관련 규정	비고
강원도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강원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기도	제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	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광주광역시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제2조(개방원칙) ①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	제2조(개방원칙) ① 법 제2조 각호의 공·사립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부산광역시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제3조(개방원칙) ①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울산광역시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전라남도	제4조(개방원칙)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	제3조(이용허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충청남도	제2조(개방원칙)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주시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개방 대상 중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에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타법개정]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43호, 2016.2.3., 일부개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27조(처리결과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